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국제통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5급 2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지방항공청의 정원 2명(5급 2명)은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상향 조정한 직급의 정원 중 국토교통부의 정원 30명(5급 24명, 6급 6명),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5명(5급 10명, 6급 5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원 2명(6급 2명)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공정건설지원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및 디지털도로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5월 31일에서 2025년 7월 21일까지로 연장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1명(4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토교통부의 정원 2명(5급 2명)과 지방항공청의 정원 2명(6급 2명)을 각각 상호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하부기구 중 개방형직위 일부를 해제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99.99. ~ 99.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복합도시정책과”를 “성장거점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 간석지의 개발

11. 시화 방조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1항 제8의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도시정책과장”을 “성장거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복합도시정책”을 “성장거점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기업혁신파크의 지정·개발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7.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8. 캠퍼스혁신파크의 지정·개발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9.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개발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관리국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항제5호 중 “보안심사위원회”를 “지방항공보안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편익 및 안전”을 “보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자체보안계획 및 자체우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항공보안법 시행령 제20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3. 항공기 내(보호구역 포함) 무기반입 허가에 관한 사항
14. 특별보안검색 물품허가 등에 관한 사항
15. 상용화주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6. 항공보안장비 성능점검용 시험물품 승인에 관한 사항 (시험물품 승인으로 운용중인 항공보안장비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공항 등의 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18. 보안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19. 액체·분무·겔 류(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STEB) 상용공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 항공기내 기내보안요원 지정에 관한 사항
21. 항공보안 점검활동 및 사고조사 업무

제2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항공기정비업자 및 전문교육기관”을 “항공기정비업자·전문교육기관 및 국외 운항 항공기 사용권리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한다.

4.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같은 조 제4항 제13호 중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제29조제3항제3호 중 “군항공기관”을 “인접 관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품질관리·연구 및 개선”을 “연구 및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4. 관할 비행장 및 접근관제 운영 규정 제·개정

같은 조 제5항 제3호 중 “관리 및 지도·감독”을 “관리에 관한 검사·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항개발사업(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

12. 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
제32조제2항제19의2호 중 “의 지정·승인 등에”를 “ 등 항공보안법 상 허가·승인·지정에”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21. 항공보안 감독관을 통한 사고조사 및 점검업무

22. 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23. 보안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같은 항 제14호 중 “안전감독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수리”를 “안전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제10호 중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제35조제2항제9호 중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에 관한 군 항공기관”을 “인접 관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3항제18호 중 “의 지정·승인 등”을 “등 항공보안법 상 허가·승인·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2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항공보안 점검활동 및 사고조사 업무

20.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21.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22. 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4항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항공기정비업자 및 전문교육기관”을 “항공기정비업자·전문교육기관 및 국외운항 항공기 사용권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37호 중 “안전감독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수리”를 “안전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8호 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한다.

5.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같은 조 제5항 제9호 중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에 관한 관련 기관”을 “인접 관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제4호 중 “지도·감독”을 “검사·지도·감독”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4명”을 “5명”으로 하고, “방재안전사무관 2명 및 철도경찰주사보”를 “방재안전사무관 2명,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및 철도경찰주사보”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도시활력지원과장, 건축문화경관과장, 공항운영과장”을 “도시활력지원과장, 공항운영과장”으로 한다.

별표 7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6”을 “27”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1”을 “60”로 하며, 항공사무관 “18”을 “16”으로 하고, 항공주사 “27”을 “2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014”를 “1,015”로 하고, 일반직 계 “1,003”을 “1,004”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6”을 “27”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1”을 “60”로 하며,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0”을 “62”로 하고, 항공사무관 “18”을 “16”으로 하며,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

안전주사 “10”을 “11”로 한다.

별표 9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9”를 “20”으로 한다.

별표 9의2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9”를 “20”으로 한다.

별표 12 중 항공사무관 “11”을 “13”으로 하고, 항공주사 “165”를 “163”으로 한다.

별표 12의2 중 항공사무관 “11”을 “1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5”를 “3”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5월 31일”을 “2025년 7월 2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7의2의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4명,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6명, 별표9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10명, 행정주사·공업주사·항공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 또는 연구사 5명, 별표11의2의 철도경찰주사 2명, 별표12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3명, 행정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7의2의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24명,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명, 별표9의2의 행정주사·공업주사·항공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 또는 연구사 10명, 시설주사보 5명, 별표11의2의 철

도경찰주사보 2명, 별표12의2의 행정주사·공업주사·항공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 또는 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토도시시설) ① ~ ⑥ (생략)	제7조(국토도시시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도시실에 국토정책과 · 수도권정책과 · 지역정책과 · 산업입지정책과 · <u>복합도시정책과</u> · 도시정책과 · 도시경제과 · 도시활력지원과 · 녹색도시과 · 스마트도시팀 · 건축정책과 · 녹색건축과 · 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안전과 · 국토정보정책과 · 공간정보제도과 · 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스마트도시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 ----- <u>성장거점정책과</u> ----- ----- ----- ----- ----- ----- ----- ----- ----- ----- ----- ----- ----- -----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수도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u>반월특수지역 및 시화 간석지의 개발</u>
<신설>	11. <u>시화 방조제 유지관리에 관</u>

⑩ (생 략) ⑪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u>8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u> · 개발 9. <u>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u>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10. ~ 20. (생 략) ⑫ <u>복합도시정책과</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복합도시정책</u>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 9. (생 략) <u>10.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 간석지의 개발</u> <u>11. 시화 방조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12. 삭 제 13. ~ 1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한 사항</u>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u>일반산업단지</u> ----- ----- 10. ~ 20. (현행과 같음) ⑫ <u>성장거점정책과</u>----- -----. 1. <u>성장거점정책</u>----- ----- 2.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13. ~ 15. (현행과 같음) <u>16. 기업혁신파크의 지정·개발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한 사항</u> <u>17.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u>
--	--

<신 설> <신 설> 제19조(도로관리국) ① 도로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u>보한다</u>.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관리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u>보한다</u>. ② ~ ⑨ (생략)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 ③ (생략)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보안심사위원회</u>의 운영 6. (생략) 7. 공항시설 이용자의 <u>편의 및 안전</u>에 관한 사항 8. ~ 11. (생략) <신 설>	<u>개발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한 사항</u> 18. <u>캠퍼스혁신파크의 지정·개발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한 사항</u> 19. <u>도심융합특구의 지정·개발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한 사항</u> 제19조(도로관리국) ① ----- ----- ---- <u>보한다</u>.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방항공보안협의회</u>---- 6. (현행과 같음) 7. ----- <u>보안</u>----- 8. ~ 11. (현행과 같음) 12. <u>자체보안계획 및 자체우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u>
--	---

<신 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20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신 설>	13. 항공기 내(보호구역 포함) 무기반입 허가에 관한 사항
<신 설>	14. 특별보안검색 물품허가 등 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상용화주 지정 등에 관한 사 항
<신 설>	16. 항공보안장비 성능점검용 시험물품 승인에 관한 사항 (시험물품 승인으로 운용중인 항공보안장비 성능을 확인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17. 공항 등의 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 설>	18. 보안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액체·분무·겔 류(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STEB) 상 용공급자 지정 등에 관한 사 항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 ~ ② (생 략)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20. 항공기내 기내보안요원 지 정에 관한 사항 21. 항공보안 점검활동 및 사고 조사 업무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분장한다.

1. ~ 3. (생 략)

4.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점검

5. ~ 9. (생 략)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 정비
업자 및 전문교육기관 안전관
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1. ~ 12. (생 략)

1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4. ~ 22. (생 략)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
장치의 비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4. ~ 22. (생 략)

⑤ (생 략)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
국) ① ~ ② (생 략)

③ 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2.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5. ~ 9. (현행과 같음)

10. -----
-----항공기 정
비업자·전문교육기관 및 국
외 운항 항공기 사용권리자의

11. ~ 12. (현행과 같음)

1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14. ~ 22. (현행과 같음)

④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초경량비행장치-----

14. ~ 2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
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u>군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u>	3. <u>인접 관제기관</u> -----
4. <u>공항 및 접근관제규정의 제정·개정</u>	4. <u>관할 비행장 및 접근관제 운영 규정 제·개정</u>
5. <u>항공교통관제업무의 품질관리·연구 및 개선</u>	5. ----- <u>연구 및 개선</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u>항공관제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처리</u>	<삭제>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비행장·공항의 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u>	3. ----- ----- <u>관리에 관한 검사·지도·감독</u>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u>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신설>	11. <u>공항개발사업(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u>
<신설>	12. <u>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u>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생략)

② 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19의2. 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0. (생략)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② (생략)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점검

6. (생략)

7. 이동지역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8. ~ 11. (생략)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 등
항공보안법 상 허가·승인·지정에 -----

20.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21. 항공보안 감독관을 통한 사고조사 및 점검업무

22. 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23. 보안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24. (현행 제20호와 같음)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1. (현행과 같음)

12.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운송사업자· <u>항공기 정비 업자 및 전문교육기관</u> 의 안전 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2. ----- ----- <u>항공기 정비 업자·전문교육기관 및 국외 운항 항공기 사용권리자</u>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14.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 기 <u>안전감독 및 초경량비행장 치 신고수리</u> 에 관한 사항	14. ----- -- <u>안전감독</u> ----- ----
15. <u>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u>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u>항공레저스포츠사업</u> ----- ----- -----
16. ~ 18. (생략)	16. ~ 18. (현행과 같음)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 장치</u> 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u>초경량비행장치</u> ----- ----- -----
11. ~ 19. (생략)	11. ~ 19.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 국) ① (생략)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 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관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에 관한 군 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u> 10. · 11. (생략) 12. <u>항공관제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 처리</u> 13. (생략)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② (생략)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18. <u>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9. (생략)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공항소방 운영 및 인명구조</u>	9. <u>인접 관제기관</u>----- 10. · 11. (현행과 같음) <삭제> 13.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7. (현행과 같음) 18. ----- <u>등 항공보안법 상 허가·승인·지정</u>----- 19. <u>항공보안 점검활동 및 사고조사 업무</u> 20. <u>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u> 21. <u>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u> 22. <u>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u> 23. (현행 제19호와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	--

에 대한 지도·감독

5.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점검

6. (생략)

7. 이동지역 운영에 관한 지도
· 감독

8. ~ 12. (생략)

13.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정비
업자 및 전문교육기관의 안전
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4. ~ 23. (생략)

24.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
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25. ~ 36. (생략)

37.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
기 안전감독 및 초경량비행장
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3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9. ~ 58. (생략)

⑤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2. (현행과 같음)

13. -----
-----항공기정비
업자·전문교육기관 및 국외
운항 항공기 사용권리자-----

14. ~ 23. (현행과 같음)

24. 초경량비행장치-----

25. ~ 36. (현행과 같음)

37. -----
- 안전감독-----

38.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39. ~ 58. (현행과 같음)

⑤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에 관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u>	9. <u>인접 관제기관</u> -----
10. <u>항공관제 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 처리</u>	<삭제>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⑥ 항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항시설의 개량·유지 및 보수에 관한 <u>지도·감독</u>	4. ----- ----- <u>검사·지도·감독</u>
5. ~ 22. (생략)	5. ~ 22. (현행과 같음)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 ----- ----- -----

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4명(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및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제5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도시활력지원과장, 건축문화경관과장, 공항운영과장, 국토교통인재개

-----5명-----

-----방재안
전사무관 2명,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명 및 철도경찰주사보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시활력지원과장, 공항운영
과장-----

발원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 획과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서울 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은 임 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 ----.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공정건설지원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및 디지털도로팀은 <u>2023년 5월</u> <u>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 ④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 ----- <u>2025년 7월</u> <u>21일</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u>26</u>	<u>27</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1</u>	<u>60</u>	-1
•	•	•	
•	•	•	
항공사무관	<u>18</u>	<u>16</u>	-2
•	•	•	
•	•	•	
항공주사	<u>27</u>	<u>29</u>	+2
•	•	•	
•	•	•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14</u>	<u>1,015</u>	+1
·	·	·	
·	·	·	
일반직 계	<u>1,003</u>	<u>1,004</u>	+1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u>26</u>	<u>27</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1</u>	<u>60</u>	-1
·	·	·	
·	·	·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 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 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60</u>	<u>62</u>	+2
·	·	·	
·	·	·	
항공사무관	<u>18</u>	<u>16</u>	-2
·	·	·	

·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 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 주사 · ·	· <u>10</u> · ·	· <u>11</u> · ·	+1
--	---	---	-----------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u>1</u>	<u><삭 제></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9</u>	<u>20</u>	+1
·	·	·	
·	·	·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u>1</u>	<u><삭 제></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9</u>	<u>20</u>	+1
·	·	·	
·	·	·	

[별표 1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항공사무관	<u>11</u>	<u>13</u>	+2
•	•	•	
•	•	•	
항공주사	<u>165</u>	<u>163</u>	-2
•	•	•	
•	•	•	

[별표 12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항공사무관	· · <u>11</u>	· · <u>13</u>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항공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 관 · 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u>5</u>	<u>3</u>	-2
· ·	· ·	· ·	